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전문가 간담회, 2010.1.21.

#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경제 회생 입법 비교

김 용 호(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목차>

- I.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동향 분석
- II.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입법 동향 분석
- III.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수정안 385:			
2008년 경기부 양법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H.R.5140)	Nancy Pelosi 하원의장	1520억 달러의 세금 환급 조치	2008. 1.29	35 (기권 10)/380: 34	2008. 2.7	81:16	2008. 2.13
주택시 장 및 경기 회복법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H.R.3221)	Nancy Pelosi 하원의장	1) 비우량주택담보대 출 피해자 구제 2) 프레디 맥과 패니 매이 등에 대한 정부 의 개입	2007. 8.4/2 008.7. 26	241:172	2008. 5.8.	72:13	2008. 7.30
긴급경 제안정 법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H.R.1424)	Henry Paulson 재무장관	7000억달러의 부실 자산 경감프로그램 (TARP) 설치	2008. 9.29/ 2008. 10.3	229:205 (F)/263: 171(P)	2008. 10.1.	74:25	2008. 10.3
자동차 산업의 금융 및 구조조 정법	Auto Industry Financing and Restructurin g Act (H.R.7321)	Mr. Frank of Massachu setts	자동차3사의 구조조 정을 조건으로 140억 달러 긴급 대여	2008. 12.10	237:170 (P)	상원 에서 필리 버스 터로 무산		
미국경 제회생 과 채투자 법	American Economic Recovery and Reinvestmen t Act of 2009 (H.R.1)	David R. Obey(WI, D)	경기부양과 감세를 위한 7872억달러의 재정지출	2009. 1.28	246:183	2009. 2.10	60:38	2009. 2.17
미국 청정에 너지와 안보법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H.R.2454)	캘리포니 아 민주당하 원의원 Henry Waxman/ 메서추세 츠 민주당 하원의원 Edward Markey	1)2020년까지 전력 회사들이 전력수요의 20%를 재생 에너지 로 충족 2)산업, 건물, 가전 분야의 새로운 에너 지 효율 기준 의무화	2009. 6.26	219:212 (P)	계류 중		

월가 개혁과 소비자 보호법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R.4173)	매서추세츠 하원의원 Frank Barney	1) 금융안정위원회(FSC)를 설치해서 부실우려 금융회사 지정 및 해제 2) 부실회사 처리를 위한 대형금융 기관의 1500억 달러의 펀드 조성 3) 금융소비자보호기구(CFPA)설립	2009.12.11	223:202 (P)	계류 중		
----------------	---	-------------------------	--	------------	-------------	------	--	--

- <표1>에서 보는 것처럼 7개 법안을 분야별로 보면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부양책이 2개(2008년 경기부양법, 2009년 미국경제회생 및 채투자법), 금융 관련 법안 3개(2008년 주택시장안정 및 경기회복법, 2008년 긴급 경제안정법, 2009년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산업정책 관련 법안 2개(2008년 자동차산업 금융 및 구조조정법, 2009년 미국 청정에너지와 에너지안보법) 등임.

- 7개 법안을 시기 별로 보면 부시행정부 시절의 4개 법안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3개 법안으로 나누어짐.

## 2.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활동의 특징

### 1) 분점정부 상황에서 110대 의회의 늦장 대응

o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2007년에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초기에 늦장 대응을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거품에 따른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실이 급격히 진행되는 바람에 금융위기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함.

o 2007년에 미국 의회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를 비롯하여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2008년 1월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입법이 추진됨.

o 이러한 배경에는 부시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고수하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사태 해결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임.

## 2) 리먼 브러더스 사건직후 비상 입법 추진

o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보호 신청직후 FRB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미국 의회는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부시행정부가 요청한 소위 구제금융법안을 간신히 승인함.

- 처음에 하원은 부시행정부의 요청을 부결시켰으나 상원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여 수정안을 통과시킨 후 하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함으로써 월가의 패닉 상태를 완화시킴.

- 상원의 새로운 조건은 주로 국민의 예금보호와 감세, 금융기관 규제 강화 등으로 예금 보호한도를 25만달러로 인상하고,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금융감독 강화, 구제금융 수령기관의 CEO 보수 상한 설정 등임.

o 당시 오바마와 매케인 후보가 대선 캠페인 일정을 중단하고 워싱턴 D.C.에 가서 부시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으나 처음에 하원에서 부결되었는바, 하원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후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원안에 반대했던 57명의 하원의원(민주당 32명, 공화당 25명)이 수정안 표결에서 찬성으로 돌아섬.

o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로서 주요 내용이 7천억달러의 부실자산 회생 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이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실자산 처리 대신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결과 부실자산 처리를 금융기관의 자출에 맡겨 두게 되었는바, 앞으로 이 문제가 미국 경제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임.

- 일본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진 후 발생한 부실자산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함.

### 3) 오바마대통령 취임이후 본격적인 경제회생 입법 추진

o 부시행정부 말기에 GM과 Chrysler의 금융자회사를 포함하여 주요 금융기관에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 들게 됨에 따라 2008년 11월 대선과 총선직후 오바마대통령 당선자는 물론 제 111대 미국 의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함.

o 2008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백악관은 물론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여대야소)가 등장함에 따라 111대 미국 의회는 경제회생 입법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

o 오바마대통령과 민주당 의회지도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신속한 대응 입법을 추진해 나오고 있음.

- 오바마대통령 취임 1개월만에 대규모 경기부양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였는바, 이는 미국 의정사상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입법임.

o 민주당 의회는 2009년에 경기부양법 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법, 의료개혁법, 금융개혁법 등을 추진해 나오고 있음.

### 4) 하원의 신속한 입법과 상원의 신중한 입법 태도

o 미국 하원은 2009년 6월과 12월에 각각 <청정에너지와 안보법>, <월가 개혁과 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는 등 매우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했으나 상원은 이들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음.

o 지난 해에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서로 다른 내용의 의료개혁법안을 양원이 앞으로 어떻게 단일안을 만들어 내느냐, 그리고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에너지산업과 금융산업의 개혁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함.

### 3.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의 내용상 특징

o 2008년 이후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생 관련 입법의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케인즈주의의 부활

o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에게 은행가, 기업가의 역할을 부여하는 입법을 단행함으로써 지난 20여년간 미국과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노선은 퇴조하게 됨.

-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법안(긴급경제안정법)은 연방정부가 월가를 대신하여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을 의미하고, GM과 Chrysler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후 연방정부가 경영진을 교체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등 과거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연방정부의 경제개입이 일어나고 있음.

o 2009년 <미국경제회복과 재투자법>은 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유동성 공급과 내수진작을 위한 입법으로 케인즈주의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감세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었고, 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청정에너지안보법>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중상주의적 성향을 보여 주고 있음.

#### 2) 광범위한 경제 개혁 입법 추진

○ 미국 의회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바, 하원에서 통과된 에너지 산업 관련 법과 월가 개혁법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또 상하원에서 통과된 의료개혁법의 단일법안이 마련되는 경우 현재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 산업과 함께 에너지산업, 금융산업, 의료산업 등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질서가 새롭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II.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입법 동향 분석

### 1. 분석의 대상

○ 한국 국회가 언제 경제위기를 인식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이후 위기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국회가 2008년 가을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입법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입법 사례 9개를 분석함.

<표 2>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관련 주요 법안

법안	제안 시기	발의자	주요 내용	본회의 통과 일시	표결 결과
2009년 정기예산안 수정안	2008. 11.3	행정부	10조원의 경기부양책	2009. 12.13	총 298명/ 찬성 18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불참 69명/ 출장 3명/ 결석/ 38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2009. 1.7	김영선, 이석현, 행정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2009. 3.3	총 295명/ 찬성 167명 / 반대 60명/ 기권 3명/ 불참 43명/ 출장 3명/ 청가 4명/ 결석 15명
2009년	2009.	행정부	28조원의 경기부양책	2009.	총294명/ 찬성 168명/



추가경정 예산안	3.30			4.29	반대 8명/ 기권 6명/ 불참 95명/ 청가 11명/ 결석 6명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9. 4.1	행정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 조정 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 설치	2009. 4.29	총 294명/ 찬성 162명 / 반대 9명/ 기권 3명/ 불참 103명/ 청가 11명/ 결석 6명
농어촌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2009. 2.2	황영철 외 10인	부채 상환기간을 기존의 2009년에서 2013년으로 연장	2009. 4.29	총 294명/ 찬성 202명 / 기권 3명/ 불참 72명/ 청가 11명/ 결석 6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9. 4.1	행정부, 김효석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 지원을 위해 20조원의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	2009. 4.30	총 299명/ 찬성 169명/ 반대 44명/ 기권 9명/ 불참 50명/ 청가 6명/ 결석 21명
긴급복지 지원법	2009. 4.27	곽정숙, 최영희, 손숙미, 행정부 등	1) 긴급지원기간을 기존의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2)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기간을 1개월이내, 1회 연장하던 것을 1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 3) 긴급지원 대상에 교육을 포함,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2009. 4.30	총 299명/ 찬성 215명 / 불참 57명/ 청가 6명/ 결석 21명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	2009. 4.21	홍일표, 최철국, 김재운, 홍희덕	공공기관에서 미취업청년 취업촉진하는 기존 법률을 2013.12.31까지로 연장	2009. 9.16	총 291명/ 찬성 226명 / 반대 1명/ 기권 1명/ 불참 39명/ 청가 7명/ 결석 17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09. 2.28	김성곤, 배은희, 이인기, 행정부	1)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2)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3) 녹색경제 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 4) 녹색산업 투자회사 설립 5) 녹색 국토 조성	2009. 12.29.	

주: 본회의 통과 일자 순서대로 정리.

- <표2>에서 보는 것처럼 9개 법안 중에서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부양 관련 법안은 2개(2009년도 정기 예산 수정안, 2009년 4월의 추가경정예산), 독과점 규제 및 조세 관련 법안은 1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고, 고용 및 복지 관련 법안은 2개(2008년 12월의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 2009년 4월의 긴급복지지원법)이고, 산업관련 법안은 2개(농어촌 부채 경감을 위한 개정법안, 저탄소 녹색성장법)이며, 금융 관련 법안은 2개(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

## 2.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입법 활동의 특징

### 1) 신속한 초기 대응, 그러나 초기에 위기의 심각성 저평가

o 한국의 경우 2008년 10월에 외국자본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으로 인해 심각한 달러 부족현상과 함께 환율이 폭등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2009년도 정기예산안을 제출한지 1개월만인 11월 초에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대응을 하였음.

- 행정부가 차기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 사례는 의정사상 3번째로서 1970년의 경우 자연 재해, 1980년은 국회 해산에 따른 것으로 매우 이례적임.

- 그러나 수정 예산안에서 정부는 2009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1% 낮추어 3.8-4.2%를 기준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미국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였음.

<표 3> 2009년 3월 추경예산안의 경제 전망

	2008.11. 전망	2008.12. 전망	2009.2. 전망
--	-------------	-------------	------------

경제성장률 (%)	4% 내외	3% 내외	-2% 내외
취업자 증감 (만명)	20만명 이상 증가	10만명 이상 증가	20만명 내외 감소
수출 증가율 (%)	9% 내외	0% 내외	-15% 내외

\*출처: 기획재정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9/3);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09/4), p. 3에서 재인용.

o <표3>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정부는 2009년 2월이전에는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음.

## 2) 행정부 주도의 입법 활동

o 한국 국회는 행정부와 법률제안권을 공유하고 있고, 또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서 재정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경제정책 수립에 “정치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이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음.

- 행정부가 제안한 입법안에 대해 국회가 매우 활발한 토론이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다” 입법 현상이 발생하였는바, 예를 들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하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기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활발한 토론 없이 통과시킨 결과 1년동안 1조원도 사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 3.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입법의 내용상의 특징

### 1) 신자유주의의 퇴조

○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은 대선과 총선에서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과 함께 747(7%경제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7대 경제 강국)을 공약했으나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처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금융권 부실 방지와 내수진작을 위한 입법을 추진함.

○ 한나라당은 미국의 공화당처럼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였으나 이번 위기로 인해 미국의 민주당처럼 케인즈 방식의 수요 창출에 주력하는 경제회생 입법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경제회생 입법 속에 감세 조항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신자유주의 노선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음.

## 2) 경기부양책 중 중소기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표4> 한국과 G20국가의 경기부양책 구성 비교 (%)

	G20	한국
재정지출 분야	77	73
사회기반시설	32	28
중소기업 지원	1	21
사회안전망 구축	20	22
주택 지원	5	0
전략적 분야	4	0
기타 재정지출	16	2
세입 분야	23	27
개인소득세	8	6
간접세	4	3
법인세	10	16
기타 세입	1	1

\*출처: IMF, *Country Report: Republic of Korea*, No.09/262 (August 2009), p. 13.

○ <표4>에서 한국과 G20의 경기부양책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체 경기부양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는데, 그 이유는 한국정부가 2009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1년간 자동 연장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임.

- 이런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 연장 비율이 75%정도가 최고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100% 대출 연장을 해 주었는바,<sup>1)</sup> 이런 경우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1년간 생명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1년 후에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에 다시 연장을 요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o IMF도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100% 자동연장에 대해 경제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파행적인 정책(distortionary policy)”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교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sup>2)</sup>

### 3) 금융 관련 입법의 과잉 대응

<표5> 경제회생 관련 주요 공공자금 펀드

구분	규모	목적	운영 주체	지원 방식	설치 근거	사용액*
채권시장 안정펀드	10조원	신용경색 완화	한국은행	우량기업의 회사채 매입	2008.11. 금융위원회 발표	3조7777억원
은행자본 확충펀드	20조원	실물경제 지원	민관 합동의 운영위원회(한국은행10조, 산업은행2조, 민간투자자8조)	신종 자본증권 매입	2009.2 금융위원회 발표	3조9560억원
금융안정 기금	20조원	금융부실화 예방	정책금융공사	금융사 출자	2009.4.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상
구조조정 펀드	40조원	기업구조조정 지원, 금융권 의부실채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기업 자산 혹은 지분 매입	2009.4.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8146억원**

1) IMF, *Country Report: Republic of Korea*, No.09/262, (August 2009), p. 13.

2) IMF (August 2009).

		권 매입			관한 법률 개정안>	
예금보험 기금	5조원	부실금 용사정 리	예금보험공사	금융사 자 및 연	출 출 법>	미상

주: \*사용액은 2008년 9월 16일-2009년 8월 17일까지임. 출처: 신동진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 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 분석 42호, 2009.11. p.19.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2009년 10월말까지. 출처: 이데일리, “내년 구조조정기금 운용규모 10조로 축소,” <http://www.edaily.co.kr/news/Finance/NewRead> (검색일: 2009.12.17).

o 2009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전자의 경우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고, 후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조원의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과도한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남.

- 예를 들면 2009년 10월말까지 집행한 구조조정기금의 내역을 보면 금융기관에 6,164억원, 비금융기관에 1,982억원 등 총 8,146억원을 사용하였는바.<sup>3)</sup> 결과적으로 1차연도의 20조원중 4%만을 사용함.

- 2009년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무위는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었던 2차년도분 구조조정기금 20조원을 10조원으로 삭감하였음.

### III. 양국 의회의 경제희생 입법 비교

<표6> 한국과 미국 의회의 경제 희생 입법 비교

구분	분야	변수	주요 지표	한국	미국
----	----	----	-------	----	----

3) 이데일리, “내년 구조조정기금 운용규모 10조로 축소,” <http://www.edaily.co.kr/news/Finance/NewRead> (검색일: 2009.12.17).

입법 환경	경제 환경	위기 발생 당시의 경제 상황	GDP	약970억달러(13위)	약14조 달러(1위)
			수출의존도	38.3	8.4
			재정적자	약 -3.2%	약 -10%
			대외수지	흑자	적자
		경제 위기의 양상	금융 위기	초기에 일시적 신용경색	매우 심각
			부동산 시장의 위기	거의 없음	매우 심각
	외환 위기		초기에 일시적	없음	
	정치 환경	대통령-의회 관계	분점정부/단점 정부	단점정부	분점정부에서 단점정부로
			의원제/단원제	단원제	의원제
		의회 구조	법률 제안권	행정부와 공유	의회의 고유 권한
재정 권한			세입권과 세출승인권	세입권과 세출권	
입법 동향	입법의 내용		주로 케인즈주의에 신자유주의와 신중 상주의적 요소 가 미	케인즈주의의 부 활, 신자유주의와 신중상주의 등이 혼재	
	입법의 범위		주로 내수 진작과 금융 및 기업 부실 에 대비	경제 시스템 전반 에 걸친 개혁 입 법	
	입법 과정		행정부 주도 속에 국회의 역할이 상 대적으로 약한 편	행정부와 의회지 도자의 주도 아래 신중한 입법 추진	

## 1.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의 공통점

### 1) 케인즈주의의 부활

o 양국 모두 법안의 내용이 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신용 경색 완화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케인즈주의 노선을 채택함.

- 이것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친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이 약화된 것을 의미함.

## 2) 입법의 수렴 현상

o 양국 의회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의 수렴 현상 발생.

- 예를 들면 한국의 2009년 추경예산안과 오바마행정부의 <미국경제회생과 재투자법>, 한국의 금융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과 미국의 구제금융법안,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미국의 <청정에너지안보법> 등은 법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함.

o 양국간의 이러한 입법 수렴 현상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G20 국가들이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정책 공조를 하기로 약속한 결과라고 판단됨.

- 이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에서 국제협력이 부족하여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등을 추구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교훈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 3) 강한 정당 투표 현상

o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면 정당을 넘어서는 자유투표(cross-voting) 대신 강한 정당투표 현상이 나타남.

-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당투표가 강했지만 미국의 경우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의 차이점

### 1) 입법 범주의 차이

○ 미국 의회는 경제전반을 개혁하는 광범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편이지만 한국 국회의 경우 내수 진작과 금융기관 부실 대비 자금 조성 등에 국한됨.

- 전자의 경우 자동차 산업구조조정,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건강보험제도 개혁, 금융개혁 등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입법을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양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인데 미국의 경우 금융시스템은 물론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내수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않고 있음.

### 2) 입법과정에서 신중성의 차이

○ 미국은 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어 다시 수정안을 채택하는 등 입법과정이 신중하고, 사회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이런 노력을 발견하기 어려움.

- 한국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법은 다른 법안에 비해 이해당사자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